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11
----------	------

2013년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6월 14일, 최호정의원(10명 찬성)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7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최호정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으로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의 관장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정보화기획단의 기구명칭 변경과 정보화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명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함.

-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함(안 제3조 및 제5조, 제5조의2).
 -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명시
 -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정보문화 조성 관련 조항 정비
-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소관부처를 변경함(안 제35조).
 -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을 위한 표준 고시 부처의 명칭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화기획단의 기구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 및 제14조).
 - 정보화기획단 ⇒ 정보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 정보기획담당관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13.6.20. 공포)으로 시 규칙상의 정보화기획단 기구명칭 기 변경
- 정보화전략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격차해소 분과위원회를 폐지함(안 제11조).
 - 디지털행정추진 분과위원회 ⇒ 전자정부 분과위원회
 - 유비쿼터스도시사업 분과위원회 ⇒ 스마트도시 분과위원회
 - 정보격차해소 분과위원회 ⇒ 폐지(전자정부 분과위원회에 통합)
 - 정보보안·정보보호 분과위원회 ⇒ 정보보안 분과위원회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기획단의 기구 명칭을 변경하며, 정보화전략위원회 분과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외에 일부 조문을 추가 또는 수정하여 서울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올해 들어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

3월 23일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내용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의 관장 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의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한 것이며,

5월 22일 개정되어 11월 23일 시행예정인 내용은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시 의무적으로 정보화계획을 수립·반영,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인증제도 도입,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을 위한 시책 시행 등임.

- 동 조례안은 3월 23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35조 중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안 제35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음.

<3월 23일 개정된 법을 적용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5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u>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	제35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u>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아울러 5월 22일 개정되어 11월 23일 시행예정인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5조의2(정보화계획의 반영 등)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3호, 안 제5조제9호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항제5호를 신설하였음.

안 제5조의2는 부칙으로 시행일을 개정법 시행예정일인 11월 23일로 하였으며, 기타 ‘정보격차해소’,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추가한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됨.

<5월 22일 개정된 법을 적용해 신설한 개정안>

<p>제5조의2(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기타 5월 22일 개정된 법을 적용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3. <u>정보화의 역기능 방지</u> 등의 대책 마련	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3. <u>정보격차 해소,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u> 등의 대책 마련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9. <u>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u> 에 관한 사항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9. <u>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u> 에 관한 사항
제14조(정보화책임관)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u><신설></u>	제14조(정보화책임관)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u>5.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u>

- 다음으로 안 제7조제5항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안 제14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담당관’을 ‘정보기획담당관’으로 정보화 기획단의 기구명칭을 변경한 것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조직담당관에 시대적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고 조직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구·부서명칭 개정을 요청하여, 지난 6월 20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이미 반영된 내용으로,

‘정보화기획’은 ‘수기처리방식에서 컴퓨터 등을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의미라면, ‘정보기획’은 ‘정보화기획’에서 더 나아가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추출, 분석하여 유용한 데이터를 생산, 구성’하는 전략적 의미라 할 수 있으나,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에 의해 서울시의 정보화 시책을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의 기구명칭에서만 ‘화’자를 빼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오히려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또한 비록 정보화기획단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규정된 기구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1)부시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이고, 단순한 기구명칭의 변경이긴 하지만, 개정된 규칙을 먼저 시행하고 그 내용을 사후에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므로, 개정규칙 시행 시기를 조례 개정·공포 이후로 유예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보화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한 개정안(안 제11조제1항)은 현행 4개의 분과를 3개로 개편하면서, ‘디지털행정추진 분과’와 ‘정보격차해소 분과’를 합쳐서 ‘전자정부 분과’를 만들고, ‘유비쿼터스 도시사업 분과’를 ‘스마트도시 분과’로, ‘정보보안·정보보호 분과’를 ‘정보보안 분과’로 명칭을 수정한 것임.

<정보화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u>디지털행정추진 분과위원회</u>	1. <u>전자정부 분과위원회</u>
2. <u>유비쿼터스도시사업 분과위원회</u>	2. <u>스마트도시 분과위원회</u>
3. <u>정보격차해소 분과위원회</u>	3. <u>정보보안 분과위원회</u>
4. <u>정보보안·정보보호 분과위원회</u>	

- 그 밖에 안 제2조(정의)에 “정보문화”, “디지털행정”, “인터넷중독”의 정의를 신설하였는데, “정보문화”와 “인터넷중독”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디지털행정”은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에서 각각 인용하였음.

<5월 22일 개정된 법을 적용해 신설한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p> <p>13. “디지털행정”이란 서면 및 구두로 처리하던 행정업무를 컴퓨터 및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정보자원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업무개선과정을 말한다.</p> <p>14.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p>
--

- 마지막으로 제명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로 띄어쓰기를 변경하고, 안 제34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제2항”을 “제2호”로 오기를 바로잡는 내용임.

<기타 수정사항에 대한 개정안>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u>	<u>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u>
<p>제34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p> <p>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p>2.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p> <p>3.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p>	<p>제34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p> <p>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p>2.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p> <p>3. 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p>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12호, 제13호,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3. “디지털행정”이란 서면 및 구두로 처리하던 행정업무를 컴퓨터 및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정보자원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업무개선과정을 말한다.
14.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격차해소,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제5조제3항제9호 중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를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중 “정보화기획담당관”을 “정보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 “디지털행정추진 분과위원회”를 “전자정부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유비쿼터스도시사업 분과위원회”를 “스마트도시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안 분과위원회

제14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단장”을 “정보기획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제34조제2항제3호 중 “제2항”을 “제2호”로 한다.

제35조 중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해당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자목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서울특별시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 스마트도시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정보화기획단장”을 “정보기획단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1.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u>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u></p> <p>제2조(정의)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p> <p>13. “디지털행정”이란 서면 및 구두로 처리하던 행정업무를 컴퓨터 및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정보자원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업무개선과정을 말한다.</p> <p>14.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p> <p>1. ~ 2. (생략)</p> <p>3. <u>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u></p>	<p>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정보격차해소,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u></p>
<p>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p> <p>① ~ ② (생략)</p> <p>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8. (생략)</p> <p>9. <u>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u></p> <p>10. ~ 14. (생략)</p> <p>④ (생략)</p>	<p>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전전한 정보문화 조성</u>-----</p> <p>10. ~ 14.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u><신설></u></p>	<p>제5조의2(정보화계획의 반영 등)</p> <p>① <u>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③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u></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정보화기획담당관</u>이 된다. ⑥ ~ ⑦ (생략).</p> <p>제11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1. <u>디지털행정추진 분과위원회</u> 2. <u>유비쿼터스도시사업 분과위원회</u> 3. <u>정보격차해소 분과위원회</u> 4. <u>정보보안·정보보호 분과위원회</u> ② ~ ④ (생략)</p> <p>제14조(정보화책임관) ① (생략) ② 정보화책임관은 <u>정보화기획단장</u>이 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p>	<p><u>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u></p> <p>제7조(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정보기획담당관</u>-----. ⑥ ~ ⑦ (현행과 같음)</p> <p>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u>전자정부 분과위원회</u> 2. <u>스마트도시 분과위원회</u> 3. <u>정보보안 분과위원회</u>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정보화책임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정보기획단장</u>-----. ③ -----. 1. ~ 4. (현행과 같음) <u>5.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u> 6. (현행 제5호와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6. (생략)</p> <p>7. (생략)</p> <p>8. (생략)</p> <p>제34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p> <p>3.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p> <p>4. ~ 5. (생략)</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34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3. 제2호----- ----- -----</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35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u>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제35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 ----- -----, <u>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